

부산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합4376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은 2023. 10. 17. 원고가 C에게 5억 7,500만 원을 대여하고, C은 2023. 11. 17.까지 4억 원, 2024. 6. 30.까지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23. 11. 17.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C의 모친인 피고는 2024. 1. 31.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이자 1부 5리(연 15%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하여 대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C을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24. 5. 14. 피고에게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5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4. 5.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으나(2024차전115091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피고가 2024. 5. 30.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 내용은 C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사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대여금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남재현, 판사 박정미, 판사 길선미